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 제 안 보 를 위 한 공 급 망 안 정 화
지 원 기 본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3. 12. 26, 법률 제1982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1) 공급망 기본법(이하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2)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제안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공급망 위기에 관한 주요 시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25명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16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정함.
-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하여 단체·기관·협회의 장,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을 위원으로 하고, 단체·기관·협회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으로 함.

마.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안 제12조)

-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 대상물품,

자료제출 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이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안 제16조)

법 제19조에 따른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정함.

사. 위기대책본부(안 제22조)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기대책본부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장이 별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아. 긴급조달(안 제23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절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조달이 곤란한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구성(안 제30조)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를 7명(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동 기관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위촉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12.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주요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주요 추진방향
4. 물류·유통·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주요시책
5.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6.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7. 공급망 위기에 관한 주요 시책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 포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공급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시행계획안과 기본계획의 연계 여부, 사업 우선순위 및 중복 여부, 재원 계획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국토교통부장관
9. 해양수산부장관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1. 국무조정실장

12. 금융위원회 위원장

13.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4. 국가안보실 제3차장

15. 관세청장

16. 조달청장

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2. 공급망 관련 협회의 장

3. 기타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제5조(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미리 지명한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조정 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급망 안정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및 운용, 공급망 위기대응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미리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산업연구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해양진흥공사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대상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협회 등에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 유지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경제안보품목 등 공급망 관련 품목의 조달
2. 경제안보품목 등 공급망 관련 품목의 비축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공급망 위협의 점검

제12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또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임을 말한다. 다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침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향후 구입량·구입단가·향후 구입계획(수입량·수입단가·수입계획을 포함한다), 생산량·향후 생산계획, 재고량 등을 말하고, 문서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5항전단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물자 및 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동향 및 가격추이, 생산량 및 재고량의 변화, 관련 국가 및 기업의 정책변경, 관련 공급 및 수요기업의 특이동향, 물류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하 조에서 “운영·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운영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제출·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에 제출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후단에 따른 운영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운영·관리기관에게 신속히 공유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에 제출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위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현황조사, 현장 실태 점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확성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⑩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2.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결과
 3.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국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수출입규모·가격추이(기업별 수출입규모 및 가격추이를 포함한다)·수입국·수출입업체 등을 말하고,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의 비공개사유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별 기업명 등을 비식별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및 보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출입은행

이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6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하는 안정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계획
 2. 국내외 생산기반 확대 계획
 3. 비축 계획
 4.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
 5. 기타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1.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 경제안보품목 관련 산업의 공급량 · 수요량 · 수입량 · 비축물량 중 해당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
 2.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 수입선 다변화 계획, 생산시설 확충 계획, 연구개발 계획, 비축 계획 등
 3. 재무적 여건 : 재무적 안정성, 현금흐름 창출능력,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등
 4. 그 밖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정화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정화 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망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간담회 등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통지하는 경우 취소의 사유와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시책) ① 정부는 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원시책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과의 연계 여부,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시책을 수립한 경우 법 제8항제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지원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법 제26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경제안보서비스의 부적절한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지원
2.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인력 등의 확충, 투자 및 운영
3.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력 공급·교육·훈련 및 장비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0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 공급망 위기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 공급망 위기상황시 위기대책본부의 구성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효과적인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에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파급효과, 국민경제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안정화 선도사업

자,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위기대책본부) ① 위기대책본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기 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그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의 운영 실적, 성과 및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조달)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절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긴급수급조절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긴급수급물자의 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에게 계

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긴급조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35조제3항 2호의 손실 보전 대상에는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방출과 관련한 손실, 정부가 비축중인 물자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여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경우의 손실을 포함한다.

제24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수입·물류·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 대상, 방법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가격과 위기품목의 수급을 위한 긴급 서비스 제공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기타 대책본부장이 위기품목의 수급을 위한 긴급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제25조(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따른 피해 지원) ① 정부가 법 제37조제4

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 조정조치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손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법 제37조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26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형식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2항제7호의 외국환 업무 및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운용 등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는 기금이 부담한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

⑥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원활하고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 운용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⑦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대책본부장이 공급망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상정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이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공급망안정화 기금운용심의회에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지원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①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에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산업연구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무역협회

6. 해양진흥공사

7. 한국해운협회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법 제45조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라 함은 공급망 위험 발생 및 공급망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품목·원재료·부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수출입 등에 대한 제한 및 의무 부과
2. 품목의 비축 및 방출
3. 품목 및 서비스의 가격 제한
4.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 구성 또는 보강 조치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공급망 위기 상황 및 위험 발생시 안정화 관련 조치

제34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35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2. 소송

3.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연 락 처	(044) 215 - 7881